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닷물의 염성분을 포함한 폐수를 연안 또는 항만에 방류할 경우 적용하는 염인정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유사 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도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 2025. 1., 40일간) 예정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 비고 제6호 중 “생태독성(TU)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이”를 “생태독성(TU)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예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원인이”로,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를 “바닷물의 주성분인 Cl^- , Na^+ , SO_4^{2-} , Mg^{2+} , Ca^{2+} , K^+ 등 6종의 이온을 말한다.”로,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를 “연안해역에 방류하고 해양생물중(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를 말한다) 독성 영향이 없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2)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비고 1~5. (생략) 6. <u>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u>	[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2)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비고 1~5. (생략) 6. <u>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 초과가 예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원인이 오직 염(바닷물의 주성분인 Cl^-, Na^+, SO_4^{2-}, Mg^{2+}, Ca^{2+}, K^+ 등 6종의 이온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고 해양생물중(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를 말한다) 독성 영향이 없는 경우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u>